

新羅統一期 政治的 狀況과 服飾研究
-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난 服飾實態를 中心으로 -

全 蕙 淑

동아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Political Situation and Costumes
in the Period of King Hungduk in the Silla Dynasty
- Forcus of King Hungduk's Prohibition of Clothing -

Hea-Sook Chun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Dong-A University

目 次

Abstract	III.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난 服飾實態
I. 序 論	1. 身分別 服飾禁制 實態
II. 新羅末期의 時代的 背景	2. 服飾 分析
1. 興德王代의 政治 社會的 性格	IV. 結 論
2. 統一新羅와 對唐關係	參考文獻

Abstract

When we study the costumes of Silla Dynasty, the only well-founded data is shown in the prohibition that is promulgated in the period of King Hungduk. In the prohibition, the social limitation according to the Silla Golpum system is closely described, now it is interesting researchers very much.

Any time the promulgation of a ordinance has a proper reason, The ordinance of the period of King Hungduk also has no exceptions. It made a reason clear in the introduction -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position, the list of articles is used with different, in spite of the strict regulation, the distinction of costumes was in disorder because of the trend of luxury and so we have to make right according to law.

Some historian think that the prohibition assumes the character of an political innovation. The prohibition contains an social signification, the items of prohibition did not enumerate simply prohibition items.

위 논문은 1996년도 동아대학교 공모과제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Through a way of research to analyze the hidden meanings contained in the prohibition, we can see the social phenomenon of Silla Dynasty. And compared with the type of clothing, the kinds of clothing mentioned in prohibition have changed very much. I believe that we can find out political and social change in prohibition.

I. 序 論

統一新羅의 服飾을 연구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資料로는 《三國史記》卷33, 雜誌 第2 興德王 9년 (834년)에 頒布된 禁律에 나타나는 것이 유일하다.

이 규정에는 新羅骨品制에 토대한 신분집단에 따른 사회적 제약이 상세히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가운데 骨品制度의 構造解明, 統一新羅社會問題研究¹⁾ 등 다각도에서 조명해가며, 통일신라 사회연구의 근거자료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 규정들에서 대상이 된 物目은 色服·車騎·器用·屋舍의 네 분야에 모두 58종이 이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禁止의 物目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色服條로 약 20여개의 항목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데 골품제를 토대로 신분에 따른 규제약이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어느 시대건 制度나 法令이 頒布되는데에는 緣由가 있게 마련 이라고 본다. 이 興德王 9년에 반포된 法令에도 예외는 없으리라 보며, 이를 반포하게 된 연유를 序頭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²⁾.

즉 이 법령을 반포하게 된 연유는, 身分에 따르는 秩序에 따라 그 사용하는 物目들이 다르며 그

規制가 繼存한데도 불구하고, 奢侈風潮로 인하여 형클어지고 있으니 舊法에 의해 이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이 이 규정의 반포는 身分秩序의 解弛와 奢侈風潮에 대한 匡正으로 나타나나, 하루 아침에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미 이 같은 규정을 반포하기까지는 신라 하대의 골품제적 신분체계가 이미 崩壞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일부 史學者들은 이 같은 규정 반포의 성격을 놓고 볼 때 일련의 改革政治의 性格을 띄우고 있다고 보고 있으니,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하여 많은 수궁이 가며, 이 규정은 당시의 많은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으로 보며, 규정에 나타난 항목은 단순히 금지사항과 항목을 열거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禁止에 內在된 意味를 分析해 봄으로 말미암아 改革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신라말기의 社會相을 엿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色服條를 볼 때, 言及된 色服의 種類들이 그 統一新羅前의 우리나라 上代服飾의 固有類型과는 많이 달라진 변화를 보이고 있으니, 統一後 對外, 內의인 政治의 社會的 變化를 이 色服의 實態 가운데서도 찾아 볼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규정중에도 가장

1) 井上秀雄, “新羅의 骨品制度”, “歷史學研究” 304, 1965.

·, “新羅史基礎研究”, 1974, p. 320-324.

·, “古代朝鮮”, 1972, p. 232-240.

武田幸男, “新羅骨品制의 再檢討”,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紀要” 67, 1975.

·, “新羅興德王의 色服·車騎·器用·屋舍制”, “榎一雄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 山川出版社, 1975.

李基東, “新羅骨品制연구의 現況과 그 課題”,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한국연구원, 1980, p. 37.

·, “新羅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상동서”, p. 161.

·, “新羅金入宅考”, “상동서”, p. 208.

三品彰英, “骨品制社會”, “古代史講座”, p. 207-209.

申東河, “新羅骨品制의 形成過程”, “한국사론” 5, 서울대 국사학과, 1979.

李佑成, “三國遺事所載 處容說話의 一分析”, “金載元博士回甲記念論叢”, 1969.

李龍範, “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商人의 貿易品”, “李弘植記念韓國史學論叢”, 1969.

2) 三國史記, 卷第33, 雜誌第2

「興德王即位9年 太和8年 下教曰 人有上下位有尊卑 名例不同 衣服亦異 俗漸澆薄 民競奢華 只尙異物之珍奇 却嫌土產之鄙野 禮數失於溫僭 風俗至於陵夷 敢率舊章 以申明命 苟或故犯 國有常刑」.

많은 항목을規制하고 있는 色服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첫째, 본 規定의 時代의 背景이 되는 新羅下代의 政治 社會의 背景과 唐과의 關係를 알아보고 둘째, 色服의 種類를 骨品制에 따른 身分別 차이를 살펴봄, 色服의 性格糾明을 唐制와 比較하며 考察하고, 그 色服의 着用實態에 나타난 統一新羅下代의 社會적 實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통일신라 복식연구는 金東旭 교수의 <興德王服飾禁制의 研究>를 통해 신라 말기의 복식을 재구성해 가며 상세히 고찰한 바 있으나, 服飾禁制令의 반포 배경을 놓고 볼 때 그 당시의 착용 실태에 맞춰 규정을 반포했을 터이니, 사회적 환경 가운데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는 복식의 속성으로 볼 때, 逆으로 服飾規定을 통해 나타난 복식 실태를 통해 또한 그 당시 사회의 만연한 풍조와 현실성 등을 읽어 볼 수 있다 하겠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복식이란 많은 변수가 작용되며, 너무나 오랜 세월 지난 제도이고, 때로는 制度的 規定만을 가지고 論하므로 실제 그 사회적 현실성을 놓치는 오류도 있을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복식 실태가 한 점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허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통일신라사회를 복식을 통해 재조명해 보고자 하는 복식연구의 한 계언으로 받아들여 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II. 新羅末期 時代의 背景

1. 興德王代의 政治 社會의 性格

新羅史의 연구는 원래 단편적인 制度史의 연구에서 점차 社會발전의 規程을 硏究하고, 시대구분이 시도되면서 社會전반을 이해하려 하였다.

대개의 시대구분이 <三國遺事>, <三國史記>의 구분을 基底로 王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新羅王權의 強度나 그 性格變遷에 重點을 둔 구분으로, 왕통을 바탕으로 한 시대구분은 社會내면의 변화상을 외면하기 쉬운 약점으로 말미암아 놓치기 쉬운 관점을 보완하고자 李基白 교수의 試圖³⁾

이래, 金哲垓⁴⁾, 李光奎⁵⁾, 申滄植 등이 신라왕권의 강도나 그 성격변모에 重點을 두고 시대구분을 달리해 보기도 하였다.

신라역사의 가장 주목 받는 시기는 <三國史記>, <三國遺事>의 구분에 따른 中古(法興王-眞德女王)와 中代(武烈王-善德王)로 신라의 황금기가 되고, 강력한 왕권이 확립된 시기이다. 王權과 制度整備는 部族의인 貴族勢力間의 정치적 타협속에서 출발하여 점차 왕권을 뒷받침하는 官僚制度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이 시대에 불교의 사상적 통일을 통해 또한 국민적 단합을 꾀하고 있으며, 후에 삼국을 통일한 후 그 왕권은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官僚制는 또한 骨品制라는 엄격한 身分秩序를 유지시킴으로 骨品制와 官僚制의 상호규제를 통한 정치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행정부와 유사한 궁정관부를 설치함으로써 牽制와 造化속에서 王權을 지키려는 制度였으며, 명실공히 國王에게 직속하는 貴族官僚로 再編成된 것이다.

그러나 後代에는 이러한 貴族 牽制의 制度도 결국 眞骨爲土의 兼職과 獨占으로 파행적인 관료제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왕권 쟁탈전을 벌이게 되며, 後代의 귀족 연합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興德王은 新羅 第42代 왕으로 재위기간은 A.D 827-836년으로 기록은 전하고 있다. 申滄植의 신라사 시대구분 <表 1>를 참조하여 볼 것 같으면, 이 시대는 국가체제가 동요되는 下代 혼란시대로 왕위 쟁탈이 일어나고, 貴族間의 抗爭時代가 계속되며 정치적 갈등이 많았던 혼란시대에 재위했던 왕으로서, 前王 憲德王의 동생으로 憲德王 金秀宗과 함께 조카 애장왕을 살해하고, 그의 뒤를 이어 즉위 한 역사 왕위 쟁탈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던 왕이다.

그의 형 헌덕왕은 王權의 專制主義를 지향하며 많은 改革政治를 推進하였으며, 六頭品 세력을 힘입어 권력을 전담하게 되니, 王權의 專制主義化 경향에 대한 貴族層의 반발이 있었으며, 흥덕왕 역사 그의 형 헌덕왕의 뒤를 이어 개혁의 시도

3) 이기백, "신라해공왕대의 정치적 변혁", "신라정치사학회연구", 1958, p. 83-233.

4) 김철준, "한국고대국가발달사", "한국문화사대계 I", 1961, p. 513.

5) 李光奎, "신라왕실의 혼인체계", "사회과학논집"1, 서울대, 1976, p. 127-148.

<表 1> 새로운 신라사의 시대구분

구분	시대	왕대	사회
제1기	國家形成期 (B.C57-A.D500)	1. 赫居世-訖解王 (B.C 511-A.D 356) 2. 奈勿王-炤知王 (356-500)	· 同一始祖廟時代 · 自然變異에 王位交替時代 1. 王의 推戴選舉時代 2. 世襲過渡時代
제2기	國家體制完成 民族決定期 (500-681)	1. 智證王-善德女王 (500-647) 2. 眞德女王-文武王 (647-681)	· 世襲確立時代 · 同一神宮時代 · 國家體制完備時代 1. 世襲確立, 國家體制整備時代 2. 武烈王權의 成立時代· 民族決定時代
제3기	民族文化開發期 民族國家發展期 (681-785)	神文王-宣德王 (681-785)	· 民族文化發展時代 · 武烈王權專制時代
제4기	國家體制動搖期 (785-887)	1. 元聖王-神武王 (785-839) 2. 文聖王-定康王 (839-935)	· 貴族間의 抗爭時代 · 元聖王系時代 · 下代混亂時代 1. 貴族間의 抗爭時代 2. 貴族間의 妥協試圖時代
제5기	國家體制解體期 (887-935)	眞聖女王-敬順王 (887-935)	· 豪族의 自立時代 · 思想의 複合化時代 · 新羅의 滅亡時代

를 계속하며 행정체계의 지위를 높이고자 唐制를 따른 행정기구 改編, 물리적인 힘에 의한 貴族勢力의 抑制, 또한 그를 통한 王權의 專制化 指向에 힘썼으며 복식금제 또한 이러한 改革政治의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興德王代의 王權強化와 專制化를 위한 改革은 일정한 限界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여지니 貴族勢力의 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으며, 많은 私兵을 거느리고 있는 貴族의 존재는 그 힘이 의연히 유지되고 있었다고 본다.

興德王 死後 王位爭奪戰이 귀족들의 私兵세력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독립된 家系의 長이 서로 聯合, 抗爭하면서 強固한 私兵組織을 거느리고 있는 상황에서 왕권의 강화를 위한 여러 조처는 그 실시 자체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을 수밖

에 없었고 그 효과 또한 미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⁶⁾.

또한 憲德·興德王 두 왕대에 걸친 專制主義 지향의 귀족세력들에 대한 견제와 改革에는 六頭品의 협조가 있었다고 보며, 육두품의 정치적 진출이 두드러지니 이에 대한 귀족세력들의 반발이 심하여지고, 聯合 귀족세력에 의한 육두품의 견제, 나아가서는 전제주의화의 축소, 연합세력 상호간의 대립이라는 형세로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興德王 9년(834년)에 반포된 色服·車騎·器用·屋舍 등의 여러 규정은 이 귀족세력 대두의 표징으로 당시의 사치풍조를 금지시키기 위한 반포라기 보다는 귀족들의 요구에 의해 골품간의 계층구별을 더욱 엄격하게 하자는 취지로

6) 김동수, 한국사 연구39, 한국사 연구회, 1982, 12, p. 45-47.

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2. 統一新羅와 對唐關係

統一新羅는 唐의 환심을 사서 힘을 아울러 百濟, 高句麗를 차례로 覆滅시키고, 통일사업이 이루어진 후 제반 制度施設의 整備, 經濟生活의 安定, 唐과의 類數한 交流 등으로 新羅의 文化는 黃金期를 맞이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절정기는 新羅 中代의 성덕왕-경덕왕대로, 이때는 唐에 있어서도 盛唐(中唐)시대로 新羅, 渤海 이외에 日本, 回紇(內外蒙古의 地), 高昌(今 新疆), 南詔(今 雲南), 吐蕃(今 西藏) 등의 貢使·학생·승려의 왕래가 잦으며 唐의 文化는 外來要素를 많이 가미한 다차다양의 隆盛이 극에 달하였을 때였다.

新羅에서 건너간 유학생과 승려 중에는 唐土에서 활약하여 이름을 날린 이도 많았지만 그 다채로운 唐의 文물을 本國으로 수입하여 각 부문(종교·학문·문학·예술 등)의 새로운 기운을 일으킨 이도 많았다. 이리하여 統一新羅의 知識階級의 文化意識은 점점 향상되어 國都를 중심으로 絢爛한 문화의 꽃을 피우게 하였던 것이다⁷⁾.

통일신라의 최고의 교육기관인 國學의 조직과 내용을 보자면, 唐制를 모방한 것으로 그 교과내용에 있어서도 論語·孝經을 필수과목으로하여,

禮記·周易·春秋左氏傳·毛詩 등을 선택하게 하였으며⁸⁾, 학생의 입학신분도 大舍(계 12위)이하 무위자에 이르기 까지 허용하였으며, 태학에서도 원래는 귀족계급 자제들에게 출세의 길을 여는 기관이었으나 이곳에도 제38대 元聖王대(A.D 788)에 독서삼품과한 과거제도 비슷한 제도가 생기게 되며, 이를 통해 인재를 등용하여 쓰게 된다.

원래 신라는 인재등용을 閥族(骨品)을 승상하여 귀족계급의 인물을 많이 채용하게 되었는데, 이 제래의 族閥본위가 무너지고 학벌본위, 시험본위로 화하게 된다는 사실은 많은 사회적인 변화의식을 예측하는 제도의 변화라 볼 수 있다 하겠다.

신라의 對唐관계를 世紀별로 비교하면 <表 2>와 같다. 신라의 對唐교섭은 신라의 정치적 흥망과 그 軌를 같이 하고 있으며 넓은 의미의 朝貢속에 각기 다른 목적을 띤 使節과 宿衛, 宿衛學生이라는 특수한 외교 형태까지 있었다.

外交는 국력의 상징으로 왕권의 강화와 외교사절 파견회수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공속에 이루어진 문화보상과 국제질서의 공존은 양국관계의 정상화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정치적 안정의 관건이 되었다고 본다⁹⁾.

<表 2> 새기별 新羅의 對唐交涉內容

세기	7	8	9	10
내용				
外交關係	71회	83회	45회	5회
王別回數	眞平王(10) 善德王(12) 眞德王(12) 武烈王(8) 文武王(25) 神文王(2) 孝昭王(2)	聖德王(45) 孝成王(8) 景德王(12) 惠恭王(12) 宣德王(2) 元聖王(2) 昭聖王(1) 哀莊王(1)	哀莊王(4) 憲德王(8) 興德王(12) 僖康王(2) 文聖王(4) 景文王(8) 憲康王(5) 眞聖王(2)	景明王(3) 景哀王(1) 敬順王(1)
外交形態	請兵, 求法, 宿衛, 國學 入學, 戰勝報告, 謝罪	賀正, 宿衛, 宿衛學生, 謝恩	宿衛, 宿衛學生, 謝恩	

7) 한국사, p. 665.

8) 三國史記, 職官志

「教授之法, 以周易, 尚書, 毛詩, 禮記, 春秋左氏傳, 文選, 分而爲之業, 博士·助教一人, 或以禮記, 周易·論語·孝經, 或以春秋左傳·毛詩·論語·孝經, 或以尚書·論語·孝經·文選, 教授之」.

9) 신형식, 신라사, 한국문화총서10, 이대출판부, 1985, p. 202-203.

唐의 玄宗은 渤海, 靺鞨의 대항에, 唐 憲宗은 李師道의 반란 진압에 신라측 원조를 요청했고 신라는 이에 응하니, 신라의 대당 군사협조는 모두 동아시아의 세력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관계의 확대로 볼 수 있다.

對唐外交 중 독특한 형태로 宿衛를 들 수 있는데, 唐帝는 주변 여러 나라의 王子를 唐庭에 侍留케 하여 그 권위를 높이고, 唐의 문물을 배우게 하는 일종의 儀仗隊, 또는 人質의 존재로 원래 中國의 입장에서 창출되었으나, 그 성립배경과 존속과정에서 신라의 입장으로 변질되었던 제도로서¹⁰⁾, 宿衛는 전통적인 조공에다 인질을 결합시켜 禮儀之邦이 흡수해야 할 문화적 의미까지 포함된 종합적 교섭자로 唐과의 양국간의 연락 문제점을 연결해 주는 교양인의 역할을 다 한 것이다.

宿衛는 眞德王 2년(648) 김춘추의 아들 文王이 처음 임명된 후 시대의 요청과 입장에 따라 그 성격이 바뀌게 된다. 이를 크게 3기로 나누어 볼 때, 제1기는 統一戰爭期로 당으로부터 武將직을 받아 전쟁에 참가하고 양국의 군사적 협조자로 정치일선에서 크게 활약하고, 제2기는 中代 專制王權期로 정치안정, 문화발달에 따라 문화, 경제적 중개인으로 양국의 문물교역자로 외교적 역할을 하며, 제3기는 下代의 정치적 혼란기에 명목상의 존재로 그 지위 하락, 唐에서의 추방도 보이며, 숙위학생의 입학 안내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같이 숙위제는 華夷共生の 정치적 입장에서 성립된 것이나, 후에는 새로운 중국문물을 전해주는 문화적 외교사절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表 2>에서 언급된 宿衛學生은 唐의 대외정책 가운데 하나인 문화진흥책으로, 唐은 통일후 주변국가를 문화적으로 唐에 동화시켜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수립하며, 唐 중심의 천하질서를 꾀하려는 웅대한 계획으로 唐太宗때 學舍 1,200칸을 증축하여 國學, 太學, 四門學을 가르치고 학생을 증원하니 주변 여러 나라의 酋長들이 자제를 파견하여 공부하기를 청하므로 이를 허락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신라의 숙위학생 선발, 파견, 수학방법에 대한 구체적 문헌은 없으나 원래 中國의 中華思想에 입각한 霸・청제에 따른다면 숙위학생을 인질로 간주하여 정치적 이용을 꾀한 당의 입장에서 볼 때 왕자나 귀족의 자제인 것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그러나 숙위학생이 집중된 下代에는 거의가 六頭品계열로서 <東史綱目>卷5上 眞聖女王 乙酉3년에 신라는 唐에 朝貢한 이래 항상 王子를 宿衛로 파견하였고 또 학생들을 태학에 입학시켜 학업을 닦게 하였던 바 그 기간은 10년으로 그 외에 학생들로서 입학한 자들이 100여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신라 유학생이 숫적으로 가장 우세하였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은 新羅下代의 진골귀족들의 정치적 독점과 우위로 말미암아 육두품 계열에게 학문적 진출로 활로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며, 일반 귀족이나 육두품 계열의 정치적 추방의 의미로도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¹¹⁾.

이 같이 다수의 유학생을 보유한 신라는 내적 충실과 문화적 성숙의 기반을 가지게 되며, 唐의 문화를 본국에 들여오는 계기도 만들었다. 渡唐 유학생들은 當代를 대표하는 지식인이고, 先進文物을 목도한 선각자들로 盛唐文化를 받아들여 신라 사회 문화의 변화와 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신라의 鴻荒之俗을 고쳐 禮儀之邦으로 만들었다¹²⁾고 하니 신라의 풍속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본다.

Ⅲ.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난 服飾實態

1. 身分別 服飾禁制 實態

<三國史記>記錄에 나타난 服飾禁制의 物目들을 각 신분별로 금지항목을 비교해 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도표로 정리해 보면 <表 3>과 같다.

2. 服飾分析

<表 3>에 나타난 복식의 종류를 頭飾, 上衣,

10) 신형식,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신라의 숙위외교, p. 379-387.

11) 신형식, <통일신라사연구>, 三知院, 1990, p. 237-239.

12) 三國史記, 卷12, 末尾.

下衣, 足衣로 구분하여 分析, 考察해 보고자 한다.

1) 頭飾

頭飾은 머리를 장식하는 것을 총칭하며, 남자의 두식으로 幘頭, 여자의 두식으로는 冠, 梳, 釵가 규정에 언급되어 있으니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幘頭

幘頭는 남자의 대표적인 두식으로 貴族層인 眞骨大等에서부터 平民에 이르기까지 남자의 경우 모두 신분의 귀천없이 복두 일색으로 사용되는 천에만 계층별로 차등을 두고 있음이 금제 규정에 언급되어 있으니, 신라하대의 남자의 두식은 貴賤없이 모두 복두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원래의 우리 나라 上代社會의 대표적 두식은 <後漢書>에 의하면, 高句麗人의 두식이 大加·主簿는 모두 幘을, 小加는 折風으로 弁과 같다¹³⁾ 하고, <隋書>에도 고구려인의 두식을 설명하며, 사람들은 모두 皮冠을 쓰는데 벼슬한 사람은 冠위에 새깃을 꽂는다¹⁴⁾.

百濟와 新羅의 衣服制度와 頭飾도 高句麗와 비슷하다고 문헌은 전하고 있는데, 통일신라시대에 와서는 관모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져 우리나라 古代의 冠帽型인 折風의 型에서 貴族뿐 아니라 庶民層에 이르기까지 唐風인 幘頭 一色으로 이미 관모의 原形이 바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겠다.

幘頭는 그 沿革을 <宋史> 輿服志에, “幘頭는 일명 折上市이라 하는 바, 後周 武帝때에 이르러서 네귀를 꿰어 脚을 만들어 밑으로 늘어 뜨렸다. 隋代에 오동나무를 사용하였고, 唐代에는 藉, 또는 羅를 사용하였으며...”¹⁵⁾라 기록되어 있으니, 唐代의 幘頭의 材料는 나무에 천을 씌운 것이 아닌

천으로만 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3>에 의하면, 眞骨大等の 幘頭는 그 재료가 任意, 六頭品 用 總羅繩絹布, 五頭品 用 羅繩絹布, 四頭品 用 紗繩絹布, 平人 用 絹布로 되어 있어, 왕의 관모에 대하여는 따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하는 직물에 구애받지 않는 고급 직물의 복두를 왕의 경우도 사용하고 있었으리라 생각되며, 眞骨大等과 상대적으로 六頭品 이하에 그 재료의 차별을 크게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라의 복두를 그 형태와 구조 구체적으로 찾아 볼 수는 없으나, 唐代에 유행하던 천으로 만들어진 복두를 新羅下代에 와서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그대로 쓰고 있음을 복식금제에서 보여주고 있다. 唐代의 복두형태를 보자면 <그림 1>과 같다.

<三國史記>에 보면

“진덕왕 2년에 김춘추가 예복을 고치어 唐制를 좇기를 청한즉, 唐主가 이에 진기한 의복을 내어 춘추와 그 따르는 자들에게 주고, ... 3년 정월에 처음으로 中國衣冠을 입기 시작하였다”¹⁶⁾라 기록은 전하고 있다.



<그림 1> 幘頭

(출처 : 周汛, 高春明, 中國古代服飾大觀)

13) 後漢書, 卷一百十五 高句麗,

「大加主簿皆著 幘如冠幘 而無後 其小加著折風形如弁」

14) 隋書, 卷八十一 列傳 第四十六 東夷 高麗,

「人皆皮冠 使人加插烏羽 貴者冠用紫羅 飾以金銀」

15) 宋史, 輿服志, 卷一百五十三, 志第一百六, 輿服五

「幘頭·一名折上市, 起自後周, 然止以軟帛垂脚, 隋始以桐木爲之, 唐始以羅代藉...」

16) 三國史記, 卷五 新羅本紀五 眞德王二年

「春秋又請改其章服 以從中華制 於是 內出珍服 賜春秋及其從者, 三年 春正月 始服中朝衣冠」

政治的 목적상 唐의 服飾을 수용하기 시작한 진덕여왕이래 약 200여년 가까이 흐른 후 우리나라 고대 복식의 기본형태가 관모의 형태부터 완전히 중국복식에 따르고 있음을 위 복식금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니, 唐과의 문화 교류를 짐작케 하거니와, 당의 異民族 문화정책이 신라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직물의 등차에 있어서 특별히 眞骨大等은 王과 같이 임의로 사용케 하고, 6두품과 4두품까지는 그 구별이 뚜렷하게 구분하기 보다는 별반 차이가 없이 형식상의 등차로 보여지는 부분은 주목할 일로 이 규정을 반복하게 된 정치적 입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2) 冠, 梳, 釵

女子의 頭飾으로 冠, 梳, 釵가 언급되어 있으니 그 형태와 성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冠

冠樣式에 있어서는 <표 3>을 볼 것 같으면, 여자가 쓰는 冠帽은 冠으로만 지칭하고 있으니 남자가 쓰고 있는 관모를 가리켜 특별히 그 고유명칭인 頭를 정확하게 지칭해 주고 있음에 비하여, 당대의 여자들이 쓰는 관모의 종류가 다양함과 같이 통일신라 여자가 쓰는 관모에도 종류가 다양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관으로 통칭하며, 그 재료만 언급하고 있다.

冠에 있어서는 眞骨女 禁 瑟瑟鈿, 六頭品 用 總羅紗絹, 五頭品以下 無冠으로 그 차등을 두고 있다.

이중 眞骨女에게 금지되어 있는 瑟瑟鈿冠이 어떠한 형태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김동욱 교수는 이를 두고 禮冠으로 보고 있으며, 그 재료에 대하여 瑟瑟은 페르시아어로 碧玉이고, 布冠에 벽옥의 鈿인 花板을 단 것으로 보고 있다¹⁷⁾.

이와 같은 설명으로도 瑟瑟鈿의 형태와 구조는 짐작키 어려우니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자로, 唐의 문헌에서도 瑟瑟鈿冠의 명칭과 그 형태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진골녀의 경우 이 瑟瑟鈿冠을 금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슬슬전은 王妃의 전용관임으로 볼 수 있으니, 아마도 김동욱 교수

의 추측대로 슬슬전이란 禮冠으로서 그 재료의 종류와 형태 및 아름다움으로 불려진 이름이 아닌가 추측되며, 唐의 宮中에서 유행하던 冠의 일종을 달리 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위 규정으로 볼 때 진골계층에서도 화려한 슬슬전을 많이 장식하고 있었던 사회풍조가 있었음으로 보여지며, 어느 만큼 이 규정이 충실하게 지켜졌는지는 모르나, 이 규정을 통해 귀족계층에 제약을 가하며, 王權의 專制化를 확고히 보여 주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진골녀에게 슬슬전이 금지되었다면, 육두품 여자에게 허용되었던 천으로 만들어진 관을 진골녀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터인즉, 천으로 만들어진 관이라 지칭하는 그 관모가 어떠한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이 관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는 규정에 나타난 근거라고는 직물의 종류밖에 없으니, 이를 분석할 길이 없으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남자의 관모가 이미 唐風 일색으로 변화된 시대에 여자들의 복식도 예외는 없었으리라 본다.

<三國史記> 卷六 新羅本紀六 文武王 四年 正月에 「下敎婦人 亦服中朝衣裝」으로 분무왕대에 내린 복식에 관한 下敎는 여자복식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을 터이니, 이 역시 당대에 유행하던 직물로 만들어진 冠樣式으로 봄에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唐代的 여자 관모에 대해 살펴 보면, 唐은 外來文化에 대하여 兼收并蓄(전부 받아 들이는)의 태도를 취하였기에 漢族服飾에 대한 西域服飾의 영향이 매우 컸거니와 그 구체적 반영으로 관모에도 胡帽의 유행이 성행했다고 한다.

胡帽은 중원지역 漢族이 西域 少數民族이 쓴 帽子에 대한 총칭으로 錦帽, 珠帽, 搭耳帽, 渾脫帽, 卷 櫛虛帽 등이 있었다. 이 다양한 관모 중에서 소위 錦帽라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이름 그대로 彩錦으로 만든 모자로 화려한 비단으로 만들어진 관모를 가리키니, 이러한 금모는 통상 胡服이라 칭하여지는 錦袍와 함께 입혀졌었다고 한다¹⁸⁾.

17) 김동욱, “한국의 복식”, 신라통일기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18) 周汎, 高睿明, <中國古代服飾大觀>, 中慶出版社, 1995, p. 21.



<그림 2> 錦帽
(출처: 中國古代服飾大觀)

錦帽의 그 형태를 보자면 <그림 2>에 잘 나타나 있으니, 흡사 고대 우리나라의 折風형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다.

위의 진골녀, 옥두품 여자에게 허용했던 관이 이와 같은 당의 여인들에게 유행했던 금모의 형태인지 위의 규정에 언급된 기록만 가지고는 확증할 길이 없으며, 많은 이론의 여자가 있기는 하나,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統一新羅의 국가 정책과 많은 제도가, 당시 最強國이며 世界的인 文化의 총 집결국이자 최첨단 선두를 달리고 있던 唐의 制度와 文化를 받아들이며 변화시켜 오고, 國際的인 感覺을 익히 받아들여온 통일신라사회의 성격상으로 놓고 볼 때, 이 관의 성격상 唐의 錦帽이었는지는 증명할 길이 없으나 唐에서 유행하던 제도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여자 관모만이 우리 고유의 것을 고집, 고수하고 있을리도 만무하고, 몇 백년이 흐르는 동안 다른 복식종류들은 다 변하는데 유독이 관모만 변하지 않고 유행이 정제되어 있을리도 없을 것이나, 지금 그 형태 구조를 밝힐 자료가 없으니 답답할 뿐, 분명코 변화된 당시 唐代에 유행하던 冠帽임으로 짐작할 뿐이다.

또한 관을 허용하는 신분계층도 진골녀, 옥두품 여자에게 한정되고 있고, 옥두품녀 이하의 신분에서는 금지되고 있으니, 진골과 옥두품의 신분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주목할 일이다.

② 梳, 釵

梳는 머리빗모양의 장식 빗으로 <표 3>에 의하면 眞骨女 禁 瑟瑟鈿玳瑁, 六頭品女 禁 瑟瑟鈿玳瑁, 五頭品女 用 素玳瑁以下, 四頭品女 用 素牙角木으로 재질에 차등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梳는 唐制에서는 兩 後頭部에 꽂고 그 재료로는 木製외에 犀, 玉, 水晶, 象牙 등이 있었다고 하니¹⁹⁾ 진골녀, 옥두품녀에게 금했던 瑟瑟鈿의 鈿은 金으로 花型을 만들어 田田然히 머리에 장식하기에 鈿이라 하니²⁰⁾, 이 역시 唐代에 유행하던 머리장식 빗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림 3>에 당대의 다양한 梳의 형태를 볼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비의 梳 또한 화려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니, 당대뿐 아니라 그 훨씬 전대부터 꾸준히 사용되어온 여자 두식의 필수적인 장신구로 唐代에 유행하던 장식모티프가 수입의 형태로 들어 오기도 하고, 신라 자체 제작도 하였으리라 짐작된다.



<그림 3> 梳
(출처: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19) 原田淑人, 《唐代之服飾》, p. 85.

20) 原田淑人, 앞의 책, p. 87.

진골녀, 육두푼녀에게 금지된 瑟瑟細玳瑁의 재질로 된 빗 역시 冠처럼 왕비의 신분에서 사용하는 고급재질의 빗을 육두푼까지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회상의 뒷면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금제 규정 또한 王權 專制化의 의지라 볼 수 있다 하겠다.

釵는 岐弁로 두 가닥으로 된 비녀로 唐에서는 많은 釵를 꽂았던 것으로 그 재료도 金, 銀, 珠玉, 珊瑚, 琥珀, 水晶, 琉璃 등의 재료가 사용되었으며, 그 새김에도 鳳, 鸞, 鴛鴦, 燕雀, 鸚鵡, 蝴蝶, 魚 등이 있었다고 한다²¹⁾.

<표 3>에 의하면 眞骨女 禁 刻鏤及綴珠, 六頭品女 禁 純金以銀刻鏤及綴珠, 五頭品女 用 白銀已下, 四頭品女 禁 刻鏤綴珠及純金, 平人女 用 鍮石已下라 하니 그 재료에도 구별을 두었을 뿐 아니라 그 형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었던 바 특히 진골녀에게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綴珠를 가리키는 것은 唐代에도 유행하던 步搖와 비슷한 형태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4>에 당대에 유행하던 釵의 형태들을 볼 수 있다. 무령왕릉 출토품에서도 釵를 볼 수 있으나, 이 釵는 梳처럼 그 전대부터 꾸준히 사용되어 온 머리 장식구이기는 하나 공예양식을 달리하여 시대양식을 달리 하였을 터인즉, 그 구체적 양식은 알길이 없으나 唐代에 유행하던 양식들이 수입 또는 자체 제작되어 유행했으리라 여겨진다.

(3) 上衣

高春明에 의하면, 古代服裝을 구분할 때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衣裳分體制, 衣裳連屬制로 나누고 있다. 그 중 衣裳分體制는 상, 하의로 나눈 제도로, 통칭 上衣라 부르는 것에는 襦, 襖, 半臂, 褙褳 등이 있고, 衣裳連屬制는 上衣, 下裳이 하나로 합쳐진 것을 가리키며, 深衣, 襜褕, 袍, 衫, 掛, 袴子, 直裾, 褶子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²²⁾.

<표 3>의 복식금제에 나타난 복식 종류들을 놓고 위 구분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볼 때, 上衣로는 남자용으로 內衣, 半臂가 있고, 여자용으로



<그림 4> 釵

(출처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短衣, 內衣, 半臂, 褙褳을 들 수 있으며, 上下連屬制로는 表衣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이 같이 上衣는 위에 입는 옷의 통칭으로, 엄격히 구분하자면 옷웃만을 지칭하고 있으나, 내용 전개상 편의를 위하여 衣裳連屬制인 袍類에 속할 것으로 보여지는 表衣를 이에 포함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上下連屬制로 분류되고 있는 表衣를 살펴 보고자 한다.

① 表衣

表衣를 볼 것 같으면, 이의 제도와 성격에 대하여는 단순히 表衣라고만 언급하고 있어서 그 제도와 형태를 알 길이 없으나, 김동욱 교수는 남자의 표의를 唐制의 袍襪으로, 여자의 경우 袍衣로 보고 있으며, 長背子와 같이 大袖, 曲領에 앞이 터져있을 것이라고 보고 현재의 圓衫제와 같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²³⁾.

21) 原田淑人, 앞의 책, p. 86.

22) 高春明, <中國古代的平民服裝>, 商務印書館國際有限公司, 1997. p. 40.

男子의 表衣의 경우 <표 3>을 볼 것 같으면, 眞骨大等 禁闕織錦羅, 六頭品 用綿紬紬布, 五頭品 已下 用布로 眞骨大等에게 많은 제제를 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남자의 袍의 재료가 다른 上衣에 사용하던 직물에 비하여 비교적 매우 소박함을 볼 수 있다. 闕織錦羅가 진골대등에게 금지된 직물이니만큼 이 직물이 왕족들에게만 허용되었던 직물로 매우 고급직물임으로 짐작되며, 이의 금제를 통해 專制王權의 意志가 보임과 동시에 당시 身分階層의 혼란함을 드러내 주는 증거라 볼 수 있다.

당시 表衣가 어떠한 형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길이 없으나 추측컨대, 김동욱 교수가 밝힌 바와 같이 唐代에 貴賤에 구별없이 유행하던 團領袍로 추측함에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당대에 유행하던 호복양식인 단령포가 통일신라시화에도 일반화되고 있음은 황성동 고분과 용강동 고분에서 출토된 남자 도용들이 모두 단령포를 입고 있음을 보고도 짐작할 수 있겠다.

唐代에 입혀졌던 이 袍襪을 문헌을 통해 살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당송의 士人들은 衫이라 불러주는 衫을 입었다. 일반적으로 細布로 만들었으며, 領, 袖, 襟, 裙에 絛을 대고, 衫 아래자락은 무릎까지 내려왔다. 왕왕 橫襪을 붙여서 만든 것도 있는데 襪衫이라는 명칭이 이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보고 있다.

唐宋때에 백성들이 입은 衫과 백성들이 입은 衫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짧고 작은 것을 많이 입었는데 긴 것도 무릎을 덮지 않았으며, 또한 가랑이(사타구니)앞 뒤, 혹은 양측에서 트기를 줌으로서 활동에 편하게 하였는데, 그 형태 때문에 속창 缺襟衫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였다²³⁾고 한다.

여자의 表衣를 <표 3>에서 볼 것 같으면, 眞骨女 禁闕織錦羅, 六頭品女 用中·小紋綾綿絹, 五頭品女 用無紋獨織, 四頭品女 已下 綿紬已下로 眞骨女 역시 眞骨大等에게 금지되었던 闕織錦羅를 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자들의 포의 재료가 남자들의 袍의 재료에 비해 그 규제가 비교적 완

화되고 있으니 남녀의 특성상을 고려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여자의 포류는 어떠한 형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가 궁금하나 유감스럽게도 그 구조를 알길이 없으나, 이도 역시 中國式 服制인 唐의 袍類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김동욱 교수는 大袖 曲領인 지금의 圓衫제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이에 우선 그 성격을 밝히기 위하여 唐代에 유행했던 여자의 袍類를 알아 보고자 한다.

우선 衫을 보자면, 衫은 본디 長衣로서, 소매가 큰 홀옷으로 가볍고 얇은 紗羅로 만드는데 단지홀으로 사용하고 안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對襟으로 되어 있어, 고대부분에서 작선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고 兩襟사이를 帶로 연결하며, 때로는 襟帶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펼쳐서 입을 수도 있으며 소매부분은 넓다 하니 그 형태와 구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하겠다.

南北朝 때에는 胡服의 영향을 받아서 衫을 입는 민간남녀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다가, 唐, 宋에 이르러 다시 유행하였고, 삼의 종류로는 襪衫, 涼衫, 團衫, 桂布衫과 缺襟衫 등이 있었다. 이 삼은 본래 남자들이 사용하였는데, 晚唐, 五代이후에 부녀에게도 衫이 보편화되었다²⁴⁾ 하니 衫이 본디 남자의 제도였으나 후에 와서 여성들에게 보편화된 표의라 볼 수 있다. 유명한 唐代繪畫중, <簪花仕女圖>중의 귀부인도 가볍고 투명해 보이는 寬衫을 입고 있다(그림 5).

삼은 본래 홑겹이기에 이름도 단삼이라고 불렀는데 후에 입는 사람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용도도 더 광범위하게 되어 안감을 댄 夾衫이 나타났다. 그러나 겹사이에 솜을 댄 것은 없고 고대의 방한복에는 면포, 면오만 입고 면삼이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문헌은 밝히고 있다.

삼은 홑에서 겹으로 변화되어 입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을 뿐 아니라, 이러한 변화 외에도 당, 송때의 삼은 대금에 국한되지 않고 대금위령에도 사용하였는데 형태상 포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

23) 김동욱, 총덕왕복식금계의 연구 -신라말기 복식체구를 중심으로-, <증보 한국복식사연구>, 아세아문화사, 서울, 1979, p. 108.

24) 周汛, 高春明, <중국고대복식대관>, p. 282.

25) 高春明, <中國古代的平民服裝>, p. 44-45.

26) 周汛, 高春明, <中國古代服飾大觀>, p. 282-283.



<그림 5> 衫

(출처 : 中國古代服飾大觀)

다²⁶⁾. 하니 삼이란 포를 통칭하는 용어로 차츰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금제에 나타난 표의를 위의 삼의 제도도 봄에는 이의가 없으니 지금의 원삼제도와는 그 규모와 형태가 조금 적은 삼의 제도로 보고자 한다. 또한 평인녀의 경우 表衣는 언급이 되어 있으나, 短衣인 襦에는 그 언급이 없으니 아마도 이 표의가 유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좋을 것 같다고 본다.

② 短衣

短衣를 볼 것 같으면, <표 3>에 의하면 六頭品女 禁 罽繡錦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 五頭品女 禁 罽繡錦野草羅布紡羅 總羅金銀泥縹纈, 四頭品女 用 絹已下로 옥두품 오두품녀에게 많은 제약이 가하고 있는 직물들의 거름으로 보아 매우 화려한 직물들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위 규정 중 진골녀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아 옥두품녀, 오두품녀에게 금지된 직물을 환원시켜 보자면, 매우 화려한 직물을 진골녀에게

허용하고 있으니 이는 앞 表衣의 규제사항과 비교되는 바이니, 사실 그대로라면 단의에 있어서 왕족과 동등한 위치를 누리고 있음이 주목되는 바이다.

다른 항목의 규정들이 진골계층에 많은 제약이 가하고 있음으로 왕권의 강화 의지와 귀족세력의 전체 의지를 나타내 주고 있음으로 분석되어지는 것에 비하여, 短衣를 비롯하여 뒤에 언급할 表裳, 內裳, 褙襟에 있어서도 진골계층에 규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옥두품녀와의 차등을 크게 두고 있음으로 나타난다.

이를 단순히 여자의 것이기에 남자보다 화려한 직물을 해도 그리 큰 규제를 가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어, 관도, 표의의 경우에는 남자와 비슷한 규제를 받고 있음으로 단의만 유독 이 여자의 입장을 반영해 주기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이 규제를 놓고 볼 때 이는 귀족세력의 반발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며, 聯合貴族勢力에 의한 六頭品의 牽制, 나아가 專制主義化의 縮小의 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결국 흥덕왕의 개혁정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이 복식금제의 의미는 실상은 크게 신라 후반기의 정치 사회 개혁에 지표가 되지는 못하였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며, 흥덕왕 사후 왕위쟁탈전으로 이어지는 잠재된 정치적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면으로 분석된다.

단의에 대한 중국측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중국의 고대 남녀들은 일상적으로 집에 있을 때 長衣를 입는 것 외에도 때로 短衣를 입었다고 한다. 襦는 가장 많이 입었던 단의로 許慎의 <說文解字·衣部>에 이르기를 “유는 단의다”라고 하였다.

隋·唐대에 이르러 유의 형태에 변화가 있었는데 大襟이외에 對襟을 더욱 많이 입었는데 입을 때에 衣襟을 열어 제치고, 허리띠를 매지 않고 아래자락을 치마속에 넣어 입었다. 옷소매는 통이 좁고, 소매길이는 길어도 손목까지 오게 입었다고 한다²⁷⁾.

유오는 비록 단의일지라도 소매가 길었으며, 당대에 입혀졌던 유의 착용 형태를 보자면 <그림 6>과 같다.

27) 周汛, 高春明, <中國古代服飾大觀>, p. 286.



<그림 6> 褙

(출처 : 中國古代服飾大觀)

금제에 나타난 단의는 위와 같이 당대에 유행했던 저고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며, 고대 우리 복식의 기본형태인 길이가 엉덩이까지 오며 허리선을 帶로 묶는 형태의 단의가 아니라, 唐代의 부녀들이 裳안에 넣어 입었던 형식으로 입혀졌던 褙로 추측된다. 이의 추측을 뒷받침하는 것이 용강동, 황성동 고분 출토품중 도용여인이 위 형식의 착용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평인녀의 경우에는 短衣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형식의 것이 아닌 율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고, 半臂와 褙襦 역시 언급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表衣가 유일한 上衣가 되는데 고대 복식기본형과 같은 형식으로 입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또한 남자의 경우에는 이미 고대의 기본형이었던 유의 재도가 없어지며, 포를 外衣이자 上衣 대용으로 입고 있음이 보편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③ 半臂, 褙襦

半臂는 背子の 제도로서 <표 3>을 볼 것 같으면 眞骨大等 禁 麴繡錦野草羅 總羅, 六頭品女 禁 麴繡羅, 五頭品女 禁 麴繡羅總羅, 五頭品 用 小文綾 總絹布, 五

頭品女 禁, 麴繡錦野草羅 總羅, 四頭品 用 總絹綿 總布, 四頭品女 用 小文綾 總絹已下

褙襦도 배자의 제도로서 <표 3>을 볼 것 같으면 六頭品女 禁 麴繡錦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 五頭品女 禁 麴繡錦野草羅布紡羅金銀泥總羅, 四頭品女 用 綾已下로 되어 있다.

<표 3>에 의하여 볼 것 같으면, 半臂는 남녀가 모두 착용하고 褙襦는 여자의 전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半臂, 褙襦 역시 唐制의 의복이다.

당시 半臂의 경우 五頭品女까지 眞骨女에게 제약된 직물이 언급되어 있고, 褙襦의 경우는 더욱 다채로운 高級織物이 역시 五頭品女에게 까지 언급되어 있으니, 사치한 외국산 고급직물이 보편화되어 입혀지고 있었던 사회의 실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규정을 반포하게 된 연유가 당시 신라 하대에 만연된 사치풍조를 금지하고자 하는 의지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²⁸⁾.

여자의 褙襦의 경우 半臂보다도 더욱 화려한 고급직물이 사용되고 있었음으로 보여지니, 남자보다도 여자들의 사치가 더욱 심하였던 사회의 현실로 보여지며, 단의의 겉에 입혀지는 옷이니 만큼 남에게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욕망이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앞의 短衣에서 언급한 것처럼 半臂가 六頭品女, 五頭品女에게 제약된 직물이 진골계층에는 전혀 규제를 가하지 않고 있음이 주목할 일로 이 역시 귀족세력의 반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半臂와 褙襦역시 唐制로, 平人女는 그 착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半臂와 褙襦에 대하여 문헌을 통해 살펴 보자면, 中國古代 男女 便服인 짧은 소매로 만든 것으로 漢·魏때 유행한 綉裾도 일종의 짧은 소매의 옷이며, 大襟, 交領, 소매가 넓고, 또한 옷가 장자리에 장식이 아름다운 것도 있다. 짧은 소매 옷의 소매는 긴 소매옷의 半어기에 漢·魏때 이 같은 短袖衣를 가리켜 半袖라 하였다.

隋唐시기에는 半袖衣 성행시기로 처음에는 궁중의 下級시녀들이 입었는데 후에 민간에까지 전해져서 서민남녀의 편복이 되었다. 입을때에 안

28) 三國史記, 卷三十三, 雜志 第二 色服條.

「俗漸澆薄, 民競奢華, 只尙異物之珍奇, 却嫌土產之鄙野」

에 긴소매의 短襦를 입어서 양팔을 가리웠고, 半袖衣의 소매는 그 길이가 위팔을 덮었기에 그것을 半臂라 칭하기도 하였다. 唐宋때에는 이 같은 短袖衣를 半臂라 불렀다.

半袖衣, 半臂의 소매길이는 통상 모두 위팔까지고, 唐代에는 또 일종의 短袖衣 옷옷이 있었는데 양소매가 어깨만 덮을 수 있고, 앞뒤로 衣襟을 열지 않고 입을때는 머리위로 뒤집어 쓰며 입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長袖衣 위에 입고, 아래로는 허리에 일치시켜 입었다. 이러한 복장의 이름을 褙褙이라고 하였다. 唐人小說인 <霍小玉傳>중 여주인공 霍小玉이 평상시 褙褙을 입고 있었다²⁹⁾고 한다.

이와 같이 半臂와 褙褙를 구분하여 보자면, 半臂는 여밈이 있는 소매가 짧은 半袖衣이고, 褙褙은 여밈이 없이 오늘날의 짧은 소매 티셔츠와 같이 머리위로 뒤집어 쓰며 입게 되어있는 半袖衣로 그 입는 법과 구조가 분명히 구별되고 있으니 <표 3>에는 분명히 半臂와 褙褙를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半臂를 입고 있는 唐代의 여인의 모습은 <그림 7>과 같다.

褙褙를 입고 있는 唐代의 여인의 모습은 <그림 8>과 같다.

④ 內衣

<표 3>에 內衣를 보면, 眞骨女 禁 罽縠羅, 六頭品 用 小文綾 純絹布, 六頭品女 禁 罽縠 錦野草羅, 五頭品 用 小文綾 純絹布, 五頭品女 小文綾, 四頭品 純絹綿紬布, 四頭品女 小文綾已下, 平人 用 絹布, 平人女 純絹綿紬布로 모든 남녀 계층에 내의를 거론하고 있다.

이 옷의 성격을 단순히 內衣로만 분류하기에는 平人, 平人女에 이르기 까지 絹布를 사용함을 허락하고 있으니 지나치게 정도 이상 화려한 직물을 사용하고 있고, 眞骨女, 六頭品女에게 금지된 직물 역시 일반적 속옷으로 입혀지는 內衣로 취급하기에는 정도 이상으로 화려한 직물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림 7> 半臂

(출처 : 中國古代服飾史)

그렇다고 外衣를 잘못 해석하여 오류를 범한 것으로 여기기에는 그도 보통문제가 아님으로, 外衣를 內衣라 칭하였을리도 만무하니 분명코 속에 입혀지는 옷임에는 틀림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를 놓고 볼 때 사치한 外國產 고급직물이 속옷에까지 보편화되어 입혀지고 있었던 신라하대의 사회의 실상을 보아야 할지, 아니면 단순한 속옷의 용도보다는 좀 더 일상화한 上衣의 일종인데 안에 입혀지나 겉에 드러나는 부분이 많아서 사치한 직물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추측하기 어려운 바이다.

모든 의복문화가 唐化한 현실에서 內衣만 고대 우리 복식의 원형을 가지고 있을리도 만무하나 어떠한 형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짐작하기 어렵고, 어 역시 唐制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29) 周汛, 高春明, <中國古代服飾大觀>, p. 287-288.



<그림 8> 裯襜
(출처 : 中國古代服飾史)

內衣에 대하여 중국측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소위 내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몸에 붙는 의복을 가리키며 평시에 쉽게 사람에게 보일 수 없기에 褻衣라 부르기도 한다. 漢代 내의 양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帕腹, 抱腹과 心衣가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다 앞자락만 있고 뒷자락은 없는 것으로 이러한 內衣를 입고 있으면 뒤 동부분이 드러난다(그림 9).

漢代에 또 다른 內衣양식이 나타났었는데, 앞·뒤자락이 있고, 가슴과 등을 가릴 수 있는 속칭 兩當, 혹은 裯襜이라 불리운 것도 있었다. 裯襜은 본디 內衣로만 사용하였는데, 後世에 背心의 가장 초기 형태로, 魏·晉 때에는 겉으로 내어 입기도 했는데 특히 여자들이 많이 입었다고 한다. 晉



<그림 9> 內衣 착용모습
(출처 : 中國古代服飾大觀)

人小說〈搜神記〉에 당시 부녀복식의 史實들이 반영되어 있어, 당시 부녀가 확실히 양당을 겉으로 내어 입었고, 표면에 자수를 놓기도 하고, 裯襜 안에 숨을 넣은 것도 있는데, 후세에 綿背心의 가장 이른 형태로 내의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唐代的 부녀옷에 ‘詞子’라는 내의가 있는데 그 작용이 배를 보호하는데 있지 않고 가슴을 가리는데 있었다³⁰⁾ 하니, 唐代에 입혀졌던 남자용 內衣는 裯襜, 여자용 內衣는 주로 詞子が 주로 입혀졌음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위 금제에서 표현되는 통일산라대에 內衣는 어떠한 것인지, 여자의 短衣를 보자면, 隋·唐代에 大襟 대신 對襟이며, 衣襟을 열어 제치고 대를 매지않고 아래자락을 치마속에 넣어 입었다 하니, 이때 가슴을 가리우지 못하였으므로 이 가슴부분을 가리기 위한 內衣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며, 남자의 경우 上衣엔 표의만 언급되어 있으니 表衣 안에 받쳐입던, 중단 또는 양당의 형태로 보아야 할 것 같다.

(4) 下衣

下衣는 아래를 피복하는 옷이며, 남자의 것은袴가 있고 남자의 裳은 中國制를 가리키며, 여자의 것으로는 裳裙이 있다.

30) 周汛, 高春明, 〈中國古代服飾大觀〉, p. 330.

① 袴

袴는 <표 3>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남자의 경우 眞骨大等 同表衣, 六頭品 用純絹綿紬布, 五頭品 用綿紬布, 四頭品, 平人 用布, 여자의 경우 眞骨女 禁闕繡羅, 六頭品女 禁闕繡錦羅 總羅金泥, 五頭品女 禁闕繡錦羅 總羅野草羅金泥, 四頭品女 用小文綾 絹已下, 平人女 用純 已下로 되어 있다.

원래 우리 민족은 북방민족계통의 胡服이 그 원형으로 남녀의 바지 착용은 일반적이었으나, 당대의 복식이 유행하고 있는 사회풍조에서도 바지착용은 일반화되어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규정은 말해주고 있다. 이에 금제규정을 보면 바지의 직물이 매우 고급직물을 사용하고 있었음으로 보여지며, 여자의 경우 더욱 그 사치가 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지에 대한 중국측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중국의 바지출현은 춘추시대로 그때의 ‘袴字’는 대부분 ‘袴’로 썼다. 그 형태는 매우 간단하여 후세에 套袴와 같이 바지통만 있고 袴腰와 袴襠은 없었으며, 사용할 때 종아리부분에 즉 무릎이하에 감싸고 무릎이상은 가리지 않았다 하여 이를 脛衣라고도 불렀다. <說文解字·絲部>에 이르기를 “袴는 脛衣이다”라고 하였는데 段玉裁가 주석하기를 “지금의 소위 套袴로 좌·우 하나씩 양다리에 나누어 입는다.”고 하였다.

이 같이 고대 사람들의 袴를 입는 목적은 주로 다리부분을 가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겨울에 추위를 막고 보온하는 작용을 하였으며, 대퇴와 음부는 蔽膝과 裳으로 가리고 보호하였으며 더운 여름에는 蔽膝과 裳만을 입고, 袴는 입지 않았으며, 脛衣와 衣·裳·蔽膝이 상고시대 중국사람의 복식이었다.

이 복식은 북방유목민족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았고 특히 말을 타기에 부적합하였기에 長袴만을 입었다. 戰國시기 趙의 무령왕은 군사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胡服騎射’를 채용하기로 결정한 이후로부터 漢族들도 長袴를 입었는데 처음에는 군대에서만 입었고, 대략 晉 漢대에 이르러 민간에까지 전하여져 서민남녀들

이 광범위하게 입게 되었다. 특히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奴僕, 力士 등이 활동에 편하기에 長袴 입기를 즐겨하였다³¹⁾.

唐代的 남자가 주로 입은 옷은 袍衫인데 그안에 袴를 입었다. 부녀들이 치마입기를 좋아했어도 바지입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특히 胡服이 성행할 때에 모두 바지를 입었다. 縛袴의 형태가 여전히 존재했을지라도 단지 軍將과 儀衛들이 많이 입었고 일반남녀의 바지는 바지통을 오그리고 특히 여자의 바지는 魏晉南北朝에 유행한 大口袴와는 달리 비교적 좁게 만들었으며 袴脚부분을 묶어 주었다³²⁾.

唐代에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들에게도 胡服이 유행하며, 바지착용이 일반화되니 신라 사회도 그 전대부터 일반적으로 입어 온 바지는 자연스레 일반화되어 입혔으리라 보이며, 여자들의 바지 직물이 속에 착용하는 속바지로 보기에는 너무 화려한 직물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대의 부녀들의 유행이 통일신라 사회에서도 유행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② 裳

裳에 대하여 <표 3>을 볼 것 같으면 表裳, 內裳이 있다. 表裳을 보면 六頭品女 禁闕繡錦羅 總羅野草羅金銀泥縑縑, 五頭品女 禁闕繡錦羅 總羅金銀泥縑縑, 四頭品女 用純絹已下, 平人女 絹已下이고, 內裳은 六頭品女 禁闕繡錦羅野草羅, 五頭品女 禁闕繡錦羅野草羅金銀泥縑縑, 四頭品女 已下 無로 되어 있다.

裳의 직물을 보자면, 당시 表裳, 內裳 모두 신분의 구별없이 화려한 직물을 사용하고 있던 사회상을 엿볼 수 있고, 六頭品女 이하에만 그 제약이 가하고 있고 眞骨女에게는 그 제약이 없으니 王族과 같은 직물이 진골녀에게 허용되고 있음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귀족 계층의 율두품 세력에 대한 견제의지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裳과 裙의 형태와 구조 및 어원을 살펴볼 것 같으면, 裳과 裙은 비슷하나 裙은 한 조각으로 만들고 입을 때 앞에서 뒤로 둘러 하체를 가림에 비해, 裳은 두조각인 앞·뒤 조각으로 되어 있다. 古代의 布帛은 폭이 좁아 상을 만드는데 통상 일

31) 高春明, “中國古代的平民服裝”, p. 53-54.

32) 周汛, 高春明, “中國古代服飾大觀”, p. 363-364.

곱 폭의 布帛을 합쳐 만든다. 앞 세폭, 뒤 네폭을 사용하는데 裳의 윗단에 통상 접어서 주름을 만들고, 주름의 많고 적음은 입는 사람의 허리가 굽고 가늘에 따라 결정하며, 주름의 상단을 꿰매어 허리에 연결하며, 앞뒤 두 조각 좌·우 양측에 각각 트기가 있어서 열고 닫기가 편리하다³³⁾고 한다.

치마인 裙은 裳으로부터 변천하여 온 복식으로 고대에 裙과 群 두 글자는 어원이 같은데 群은 많다는 뜻으로, 古代의 布帛의 幅이 협소하여 치마 하나를 만들려면 통상 여러 폭의 포백이 필요하였다. 이 때문에 裙이라는 명칭이 있게 되었다. 漢의 劉熙의 〈釋名·釋衣服〉에 의하면 “裙은 群이며, 여러 폭을 이은 것이다”하였다³⁴⁾.

이 같이 중국에서는 裳과 裙을 엄연히 구별하여 착용하고 있으니, 위 규정에서 각 신분별 여자에게 언급하고 있는 裳은 裙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도 오늘날 남아 있는 치마의 구조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여러 폭을 이어 위에 주름을 잡고 허리에 연결된 것으로, 그 안에 단의를 넣어 입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남자의 裳은 일반화되지 않고 있으며 唐代의 胡服의 유행이 통일신라사회에도 유행하여 表衣로 일반화되어 입혀졌음으로 추측된다.

또한 唐代 부녀의 치마길이는 前代에 비해 길게 입었으며 치마자락이 땅에 끌리도록 입고, 치마길이를 길게 보이기 위하여 부녀들은 치마를 입을 때 치마허리를 가슴에 묶었고, 때로는 심지어 겨드랑이 아래에 묶고 치마 아래자락이 발을 가렸으며 땅에 끌리게도 하였다 한다.

唐代 부녀 치마 폭도 일반적으로 넓었으며, 대다수가 6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六幅羅裙窄地” “裙拖六幅湘江水” 라는 표현이 있다. 〈舊唐書〉에 기록된 포폭의 넓이를 추산해 보면 唐代의 육폭은 지금의 3m 이상에 상당하다 하니 치마의 폭이 얼마만큼 넓었는지 알 수 있다. 6폭 외에 7폭과 8폭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치마의 형태는 환동에 영향을 주었고, 극대한 낭비를 초래하니, 〈新唐書〉 車服志에 의하면 문종이 즉위하여 車服의 사치가 지나침에 명을 내려 부

인들의 치마가 5폭을 넘지 않고 땅에 끌림이 3촌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다.

民族과 時代를 막론하고 奢侈에 대한 열망은 그 끝이 없음을 볼 수 있으니 통일신라가 당시 가장 國際性을 띄고 있는 唐代의 衣服文化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행경향도 그대로 수용하였으리라 추측해 본다.

唐代 부녀의 치마색갈도 매우 다채로와 젊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색은 선홍색의 치마로 唐代 소설에 霍小玉, 李娃같은 여자들은 평시에 줄곧 이러한 치마를 입고 있었다³⁵⁾고 한다.

당대 부녀들은 이같이 紅色을 숭상할 뿐 아니라 上衣와 치마의 색을 배합할 때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紅綠 두색을 사용한 것이다. 上衣에 紅色을 사용하고 치마에 녹색을 사용하거나 반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표 3〉에 금계에 나타난 복식 색채를 볼 것 같으면, 여자들의 복색에 赭黃, 紫紫粉金屑紅, 屑紅 絳 등의 색채들이 거론되니 이 모든 색채들이 거의 다 붉은 빛 계통의 색채로서 통일신라 사회에서 역시 여자들이 붉은 색을 선호하며 입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5) 足衣

足衣는 발을 보호하는 것으로 대체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襪과 履를 들 수 있는데 襪의 형태는 비교적 간단하고, 수천년동안 변화가 거의 없었다. 履의 형태는 비교적 복잡하여 履와 屐, 屨, 鞮, 靴 등이 있으며 그 구별은 주로 재료와 모양에 따라 다르다. 襪, 靴, 鞋, 履 등이 있다.

① 襪

襪에 대하여 〈표 3〉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 眞骨大等 任用綾已下, 六頭品 用絁綿紬布, 五頭品 用綿紬布, 여자의 경우 眞骨女 禁闕織羅, 六頭品 女 禁闕織錦羅 總羅野草羅, 五頭品 女 禁闕織錦羅 羅野草羅, 四頭品 女 用小文綾 絁綿紬布, 平人 女 用絁綿紬已下 로 되어 있다.

襪은 버선으로, 당시 버선까지 버선으로 만들

33) 高春明, “中國古代的平民服裝”, p. 49.

34) 周汛, 高春明, “中國古代服飾大觀”, p. 348.

35) 周汛, 高春明, “中國古代服飾大觀”, p. 348-352.

어 신고 있었던 奢侈가 극에 달하였던 통일신라 하대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특히 여자의 경우 그 사치는 극에 달하였다고 보여진다.

襪에 또한 襪褸가 따로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버선목을 따로 대어 장식을 하고 있었음으로 추측된다.

襪에 대하여 중국측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가장 이른 襪은 짐승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古代에는 신발을 벗고 당에 오르는 풍습이 있었는데 추운 겨울에 피말을 신고서 차가운 곳에서 있으면 발 부분의 보온에 유리하였다. 그래서 가죽말을 신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唐宋시기에 비단襪은 대부분 궁중의 궁녀들이나 무희들의 사용되었으며 민간남녀에 있어선 아주 드물게 사용되었다. 귀족가정에서도 채색비단으로 말을 만드는 것은 아주 드물었다. 사람들의 생각에 비단은 진귀한 물건이기에 방직자가 직조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발에 신는 것을 대단히 아까워했다.

서민남녀가 신는 것은 여전히 素帛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었다. 가을 겨울이 되었을 때 홉겹 포백으로 추위를 막기가 어려워져 여러 겹의 포백으로 만들거나 말속에 솜을 넣어 絨襪로 만들었다³⁶⁾고 한다.

위와 같이 당시 최강국이자 문화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唐에서도 비단말을 신기는 하였으나 귀족가정에서도 신기를 아까워했던 비단말을 통일신라사화에서는 平人에게까지 허용하고 있고, 금제규정의 뒤에는 당시에 많이 입혀지고 있으니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 사두품녀에게까지 금지되었던 비단의 종류가 <표 3>에 의하면 주로 外衣로 쓰여졌던 화려한 직물들로서 당시 사회의 의복사치가 극에 달하고 있음으로 볼 수 있다

興德왕의 복식금제와 같은 정책은 이 같은 사회 풍조로 볼 때 필수불가결한 개혁정책으로서 당시 사회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고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나, 신라하대의 국가기반의 동요, 국가체제해체의 위기를 맞이하는 통일신라의 멸망은 이 같은 사회현상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

니, 정치적 흥망성쇠와 타락, 사회적 현상의 건건과 타락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볼 수 있다.

② 履, 靴

履에 대하여 <표 3>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 眞骨大等 用皮絲麻, 六頭品 用皮麻, 五頭品 用皮麻, 四頭品 牛皮麻已下, 平人 麻已下이고, 여자의 경우 眞骨女 禁綳縵羅, 六頭品女 禁縵縵羅總羅, 五頭品女 用皮已下, 四頭品女 用皮已下로 되어 있다.

履의 경우도 唐制를 받아들여 입었을 터이나, 古代에도 신고가 들린 履를 신고 있는 모습을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볼 수 있으니 어느 정도 唐制와 습합된 형태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신고가 올라가고, 비단을 겹에 바른 가죽신인 각종 鞋의 종류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추측해 보며, 아마도 王族, 貴族의 경우에는 唐制처럼 코를 꾸민 형태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靴에 대하여 <표 3>을 볼 것 같으면, 靴와 靴帶가 같이 언급되어 있으니 발목에 끈을 묶어 신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靴帶는 언급을 안하고 靴의 재료만 언급하고자 한다.

眞骨大等 禁紫皮, 六頭品 禁烏縵縵文紫皮, 五頭品 禁烏縵縵文紫皮, 四頭品 禁烏縵縵文紫皮, 平人 禁烏縵縵文紫皮로, 당시 모든 계층에게 금지된 烏縵縵文紫皮는 진골대동에게 금지되었던 왕이 사용하고 있었던 靴의 최고급 재료로서 平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다투어 신었던 사회풍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하겠다.

靴의 전신은 鞮로서 그 형태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革鞮라고 불렀으며, 또 하나는 무두질한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韃鞮라고 불리웠다³⁷⁾. 화는 북방에서는 남자들이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여자들도 사용하였고, 唐初에는 隋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백관상복으로 사용하였다 한다.

남자들의 경우 화를 계층의 구별없이 모두 착용하고 있으나 북방민족의 의복유형중 하나인 화

36) 高春明, “中國古代的平民服裝”, p. 56-57.

37) 高春明, “中國古代的平民服裝”, p. 64.

의 착용이 고구려 고분벽화의 인물들에게서도 볼 수 있으며, 통일신라사회에 와서도 그習俗은 지속되고 있으니 이는 唐代에 유행하던 胡服의 유행풍조와 맥락을 함께 하며, 꾸준히 착용되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唐代부녀들도 靴를 신는 습속이 있었는데, 특히 궁중의 여자들이 춤을 출 때 靴를 신었으니 그것은 西域文化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당나라 사람은 화를 鞞靴라 불렀다 한다. 이 화는 통상 채색가죽이나 비단으로 만들어 尖頭短靴 하고 화위에 구슬을 상감하고 때로 방울을 달아서 춤출 때에 구슬이 영롱히 빛나고 방울소리를 내기도 했다고 한다³⁸⁾.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 여인들이 꽃아래로 靴를 신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여자들의 화를 신는 습속이 고구려에서는 보편화 되어 있었음으로 보여지나 복식금제상에서 볼 때 여자의 화는 언급이 없으니, 이는 아마도 고구려와 신라의 지역상의 차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사려된다.

즉 北方胡服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고구려 복식에 비해, 그 풍속과 의복이 고구려와 비슷하다고는 하나 남방문화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신라사회에 唐代에 여자들에게도 유행했던 靴는 부적합했던 것이 아니었는가 추측해 본다.

IV. 結 論

이상과 같이 통일신라 후대의 정치적 상황속에서 흥덕왕 9년(834년)에 반포된 色服·車騎·器用·屋舍 등의 여러 규정은 이 귀족세력 대두의 표징으로 당시의 사치풍조를 금지시키기 위한 반포이기도 하지만 귀족들의 요구에 의해 골품간의 계층구별을 더욱 엄격하게 하자는 취지로 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唐과의 공식적 교류, 유학생들은 唐의 文化를 받아들여 신라 사회 문화의 변화와 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신라의 鴻荒之俗을 고쳐 禮儀之邦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신라의 풍속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보며, 이는 고찰한 복식의 성격에서도 그 변화를 충분히 읽어 볼 수 있었다.

복식금제에 나타난 복식의 종류를 考察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冠帽에 있어 빈부귀천없이 당풍인 복두 일색이며, 여자 관모는 그 형태 구조를 밝힐 자료가 없으나, 당시 唐代에 유행하던 冠帽임으로 짐작할 뿐이다. 梳, 釵는 전대부터 꾸준히 사용되어온 머리 장신구이나 그 구체적 양식은 알 길이 없으나 당대에 유행하던 양식들이 수입 또는 자체 제작되어 유행했으리라 여겨진다.

2. 남자의 表衣는 唐代에 賁賤에 구별없이 유행하던 단령포로 추측된다.

여자들의 表衣는 唐制인 衫의 제도로 지금의 원삼 제도와는 그 규모와 형태가 조금 적은 衫의 제도로 보고자 한다. 短衣 역시 唐制로 襦의 형태로 추측된다.

半臂, 褙襦 역시 唐制이고, 內衣는 平人, 平人女에 이르기 까지 絹布를 입어 사치한 外國產 고급직물이 속옷에까지 입혀지고 있었던 사회의 실상을 볼 수 있다고 본다.

3. 袴는 唐代 胡服着用的 유행으로 더욱 일반화되어 입었으며, 褌는 여성 전용으로 당시 表裳, 內裳을 입었으며, 색채는 붉은빛 계통의 색채를 당대의 여자와 같이 선호하며 입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 足衣는 당시 襪까지 비단을 사용하니 사치가 심하였던 통일신라 하대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고, 말에 버선목을 따로 대어 장식하고 있었음으로 추측된다.

履의 경우도 당제도 있었을 터이나 어느 정도 당제와 습합된 형태인지는 알 수가 없고 아마도 왕족, 귀족의 경우에는 당제처럼 코를 꾸민 형태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靴는 화대가 같이 언급되어 있으니 발목에 끈을 묶어 신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으며, 남자는 계층 구별없이 착용하고 있으니 당대에 유행하던 호복의 유행풍조와 맥락을 함께 하며 꾸준히 착용되어 왔다고 본다.

정치적 목적상 唐服飾을 수용하기 시작한 진덕여왕 이래 약 200여년 가까이 흐른 후 우리 나라

38) 周汎, 高春明, “중국고대복식대관”, p. 428-431.

고대 복식의 기본형태가 관모부터 완전히 중국복식에 따르고 있음을 위 복식금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으니, 唐과의 문화 교류를 짐작케 하거니와, 唐의 異民族 文化政策이 신라에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시대를 막론하고 사치에 대한 열망은 그 끝이 없음을 볼 수 있으며, 당시 가장 국제성을 띄고 있는 唐代的 복식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興德王의 服飾禁制와 같은 정책은 이 같은 사회풍조로 볼 때 필수 불가결한 개혁정책으로서 당시 사회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고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나, 新羅下代의 국가기반의 동요, 국가체제해체의 위기를 맞이하는 통일신라의 열망은 이 같은 사회현상은 백락을 같이 하고 있으니, 정치적 흥망성쇠와 타락, 사회적 현상의 건전과 타락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볼 수 있다.

이 규제를 놓고 볼 때 아는 대체적으로 귀족세력의 반발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聯合貴族勢力에 의한 六頭品の 牽制, 나아가 專制主義化의 縮小의 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결국 興德王의 改革政治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이 복식금제의 의미는 실상 신라 하반기의 정치 사회 개혁에 지표가 되지는 못하였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이며, 興德王 死後 王位 爭奪戰으로 이어지는 잠재된 정치적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면으로 分析된다.

參考文獻

1. 三國史記,
2. 강용수, 한국무역의 사적연구(1)-라말이전의 대외무역-, 마산대학 5권2호, 1983.
3. 김공주, 통일신라시대의 복식 -흥덕왕복식금제명-, 부학3호, 연세대, 1970.
4. 김동욱, <한국의 복식 -신라통일기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5. 김동욱, <증보한국복식사연구 -흥덕왕복식금제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79.
6. 김우녕, 신라 삼국통일의 정치이념적 기반,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82.
7. 김동수, 신라 헌덕. 흥덕왕대의 개혁정치, 한국사연구, 39, 1982, 한국사연구회.
8. 김세운, 신라학대의 도당 유학생에 대하여, 한국사연구37, 1982.
9. 김현길, 신라민중생활고, 이상옥기념논문집, 1969.
10. 노계현, 신라의 통일외교정책연구, 국제법학회1호, 1964.
11. 박동백, 신라학대의 라당관계, 마산대학4집, 1982.
12. 손경자, 김영숙, <한국복식자료선집>, 교문사, 1985.
13. 송송백, 신라입당유학생연구, 경희대, 1973.
14. 송방송, 통일신라시대의 당악의 수용과 그 의의, 한국학보37, 일지사, 1984.
15. 신형식, 신라사, 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총서10, 이화여대 출판부, 1985.
16. 신형식, 신라 대당 교섭상에 나타난 宿衛에 관한 고찰, 역사교육8집, 1964.
17. 왕우청, <중국복장사강>, 중화대전편인회판.
18.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98.
19. 이기동, 신라 최망사관의 개요, 한우근정년기념논문집, 지식산업사, 1981.
20. 이기백, 신라육두품연구, 성곡논총2집, 1971.
21. 이명식, 신라지배계층의 성립과정, 한국사회사업대학논문집, 1979.
22. 李春植, <中國史序說>, 교보문고, 1992.
23. 이호영, 신라삼국통일에 관한 재검토, 사학지 15집, 단국대사학회, 1981.
24. 피영희, Double Descent이론 적용을 통해본 신라왕의 신분관념, 한국사론 5, 1979.
25. 한규철, 신라·발해의 정치적 교섭과정, 한국사연구43, 1983.
26. 華梅著, 이수용, 박성실역, <중국복식사>, 경춘사, 1992.
27. 原田淑人, <唐代之服飾>, 東洋文庫, 東京, 1970.
28. 周汎, 高春明, <中國古代服飾大觀>, 重慶, 重慶出版社, 1995.
29. 周汎, 高春明, <中國古代服飾風俗>, 陝西人民出版社, 1988.
30. 周汎, 高春明, <中國歷代婦女裝飾>,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 學林出版社, 1988.

31. 高春明, 〈中國古代的平民服裝〉, 商務印書館國際有限公司, 北京, 1997.
32.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1.